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3
----------	-----

제출년월일 : 2013.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 나. 환경부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체납요금 증가산 규정 및 수도요금 정산 규정이 정산 의무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삭제 하고자 함.
- 다. 또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계량기대금 제외)를 포함하도록 하며,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어정비 등 현행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 부담금의 미납에 따른 세대별 분담금의 납부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 원인자 부담금 미납에 따른 세대별 분담금 납부 강제 규정을 삭제
- 나. 급수공사 위탁사업자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

다. 동과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계량기의 동과 발생시 교체에 따른 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정함

라.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안 제19조)

- 수도요금의 정산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의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동 규정 삭제

마.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급수전의 정액요금 미부과(안 제23조제3항)

- 미사용 급수전에 대한 정액요금 부과 개선

바. 체납요금의 증가산금 규정 삭제(안 제29조제2항)

-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체납요금 증가산 규정 삭제

사.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

카드 및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 신설(안 제30조의2)

-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편의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15. ~ 11. 0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를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를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선”을 “수리”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지”를 “빈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수도계량기를”을 “급수전을 추가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노후”를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로, “급수설비”를 “급수시설”로, “공사비용”을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수선비용”을 “수리비용”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를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리, 철거 및 파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등 필요한”을 “등의”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중 “발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 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설치한 때”를 “설치한 경우”로, “인정한 때”를 “인

정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pH”를 “ph”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5조 중 “이 조례에 정한”을 “이 조례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공사를 말한다.

3. ~ 9. (생략)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 4. (생략)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략)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

-----.

3. ~ 9. (현행과 같음)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

1. -----
----- 새로 -----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예외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예외로 한다.

② ----- 빈터-----.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급수전을 추가로 -----.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략)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신설>

-----.

1.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는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 해당 -----.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 급수시설 -----
----- 비용 -----
-----.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② (생략)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생략)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수리비용 -----

-----.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은 -----
경우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의 이설, 수리, 철거 및 파손

----- 해당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 해당 -----
----- .

② -----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

--- 해당 -----
----- .

----- 예외로
한다.

② (생략)

제17조(신고) ① (생략)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의 -----.

<삭제>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그 밖의 -----

-----.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생략)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2. (생략)

-----.

② -----

-----.

-----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생략)

제23조(사용요금) ①·② (생략)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조정)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말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 3. (생략)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3. 그 밖에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요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조(요금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서 -----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④ (생략)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생략)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
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
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① (생
략)

②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수도요금의 12/
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
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
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제30조(납부고지) ①·② (생
략)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
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
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에 -----

--.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① (현행
과 같음)

<삭제>

제30조(납부고지)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발급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
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가 징수하여 수도요금을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
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한 때
2. ~ 5. (생략)

-----.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
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
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
부할 수 있다.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예외
로 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1. -----
----- 설치한 경우 -----
----- 인정한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2.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생략)

제38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② 제1항-----

-----.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2.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ph-----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정수처분)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 6. (생략)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③ (생략)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생략)

-----.

1. -----

----- 조례에서 -----

2. (현행과 같음)

3. ----- 승인 없이 -----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

-----.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현

략)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 32. (생략)

행과 같음)

② -----
----- 그 밖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 이 조례에서 정한 -----
-----.

제47조(권한의 위임) -----
----- 각 호-----

-----.

1. ~ 32.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연락처	(033) 330 - 2363

관계법령 발취

【 수도법 】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지방자치법 】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공기업법 】

제22조 (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